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: 2013년 11월 29일

신한특별단기공사채투자신탁 W-4호

약관 변경

(1) 기재사항 변경

1 투자신탁 해지관련 조항 정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p>1. 투자신탁 해지관련 조항 정정 : 제26조(투자신탁계약의 해지)</p>	<p>제26조(투자신탁계약의 해지)</p> <p>① 위탁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따라 수익권의 총좌수가 50억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신고하고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해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판매회사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,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다.</p>	<p>제26조(투자신탁계약의 해지)</p> <p>① 위탁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신탁재산 전부에 대해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(삭제)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,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다.</p>